

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

1.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

1. 당사는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체로서,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 제6원칙에 따라, 당사가 보유한 각 종목별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, 주기적으로 고객과 수익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※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 제6원칙

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
2. 이와 관하여, 당사는 수탁자 책임 정책 및 「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」에 기록의 유지 및 공시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통지 절차 및 방법

1.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용에 대해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.
2.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,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(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)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·유지하여야 합니다.
3. 그 외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에는, 「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」에 따라 회사의 웹사이트에 최소 년 1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